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26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47호, 2023.1.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8.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편사업 환경변화 대응 및 이용 조건 완화를 통한 계약소포 이용 확대를 위하여 발송물량 조정 및 감액 기준 신설

2. 주요내용

- 가. 사업 환경의 경쟁 심화로 총괄국장 적용 최대 200원 이하의 신규 감액을 신설하여 현업에서 대응하도록 함(안 제2조나목5)
- 나. 월평균 방문소포우편물 발송 물량을 300통에서 100통으로 완화 등 운영 관련 현행화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조나목1)

3. 의견제출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

○ 전 화 : 044-200-8266

○ E-MAIL : bk3124@korea.kr

○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
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4-0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 나목, 제86조제7항 및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접수하는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월 00일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대상

가. 계약대상관서

-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 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나. 계약대상우편물

- 1)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3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3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 4) 한시적(3개월 이내)으로 1,0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 5) 다수의 발송인으로부터 월평균 10,000통 이상 반품회수 또는 수취하는 방문소포우편물
- 6) 우체국쇼핑 입점업체가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다. 추가감액대상우편물

-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 2) 신규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 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 4) 중량이 1kg 이하이고 크기가 50cm 이하의 초소형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
- 5)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기본 감액

구 분	감액 범위
2kg(60cm) 이하	중량 5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1% 이하
5kg(80cm) 이하	중량 5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42% 이하
10kg(120cm) 이하	중량 10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5% 이하
20kg(140cm) 이하	중량 20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34% 이하
30kg(160cm) 이하	중량 30kg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27% 이하

나. 계약요금 감액기준표

구 분	감액요건		감액요금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가. 우체국 계약고객전용시스템 이용 (연계 시스템 포함)		100원 이하	
	나. 고객운송	우체국까지 운송	200원 이하	
		집중국(물류센터)까지 운송 (월 1,000통 이상 계약업체)	400원 이하	
	다. 계약소포 간편접수		30원 이하	
	라. 집배코드·구분코스 인쇄		50원 이하	
2. 신 규 이 용 고 객	마. 1년 이내			
	· 월평균 1,000통 이상		50원 이하	
	· 월평균 10,000통 이상		100원 이하	
	· 월평균 20,000통 이상		150원 이하	
	· 월평균 30,000통 이상		200원 이하	
3. 장 기 이 용 고 객	바.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		1년 이상	3년 이상
	· 월평균 1,000통 이상		100원이하	150원 이하
	· 월평균 10,000통 이상		150원이하	200원 이하
	· 월평균 20,000통 이상		200원이하	250원 이하
	· 월평균 30,000통 이상		250원이하	300원 이하
4. 초소형 소 포	사. 중량이 1kg 이하이고 크기가 50cm 이하			
	· 월평균 1,000통 이상		100원 이하	
	· 월평균 10,000통 이상		200원 이하	
5. 특별감액	아. 지방청장		200원 이하	
	자. 총괄국장		200원 이하	
6. 감액 한도액			1년 미만 : 500원	
			1년 이상 : 550원	
			3년 이상 : 600원	
o 10kg(120cm) 초과 계약소포 감액불가				

다. 초소형 특정요금

구 분	월 1만통 이상	월 5만통 이상
초소형 특정요금	1,850원 이상	1,800원 이상

3. 부가비용료

요 건	부가비용료
1. 포장재질이 아이스박스인 경우(해당 소포에 한정, 권고사항)	100원 이상
2. 픽업환경(권고사항) * 노동강도, 승강기 유무, 픽업거리 등 고려	100원 이상
3. 도서행(제주행 포함, 해당 소포에 한정)	400원 이상
4. 다수지 계약의 경우 집하지 수	
· 4개 ~ 5개	50원 이상
· 6개 ~ 9개	100원 이상
· 10개 ~ 19개	150원 이상
· 20개 ~ 29개	200원 이상
· 30개 ~ 49개	250원 이상
· 50개 ~ 69개	300원 이상
· 70개 ~ 99개	350원 이상
· 100개 이상	400원 인상
* 고객운송 시 집하지 수에서 제외	
5. 수기운송장 사용(해당 소포에 한정)	500원 이상
6. 고중량 소포(10kg·120cm 초과) 비중	
· 5% 이상 ~ 10% 미만	50원 이상
· 10% 이상 ~ 20% 미만	100원 이상
· 20% 이상 ~ 30% 미만	200원 이상
· 30% 이상 ~ 40% 미만	300원 이상
· 40% 이상 ~ 50% 미만	400원 이상
7. 오규격률(권고사항) * 20~30% 50원 이상, 30~40% 100원 이상, 40~50% 150원 이상, 50% 이상 200원 이상	50원 이상

4. 기타사항

가.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나. 우체국소포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계약소포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요금 등 이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제2022-47호(2023.1.1.)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 계약소포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24년 4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